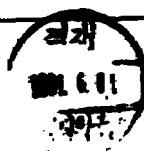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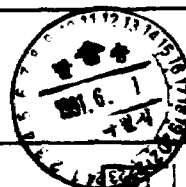


# 기안용지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분류기호<br>문서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실30314-2/1                    | (전화: 731-6746)   | 사명상<br>특별취급  |
| 보존기간  | 영구·운영구.<br>10.5.3.1.           | 시 장  |  |
| 수신처<br>보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시행일자  | 91. 5.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보조<br>기관  | 도시계획국장 권길<br>시설계획국장<br>시설계획1부장 | 협조<br>기관<br><br>법무담당관 김사관  | 문서용제<br><br> |
| 기안책임자   | 여용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신<br>명<br>의<br><br>시 장  |  |
| 경유<br>수신<br>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안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제 목   | 도시계획사업시행안 서류 공람 및 공고           |  |  |
| (제1안) : 내부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1.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이 신청한 노원구 공릉동 215-4 일대 원자력연구소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대한 도시계획사업(종합여부시설)시행안(변경)을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제27조의 2 규정에 의거 별안과 같이 신문 공고하고, 14일간 일반에게 서류 공람하고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합니다.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2. 본 도시계획사업시행(변경)안은 사전 관계 부서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,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그 결과 시행상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되신되었습니다. 끝.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(제2안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수신  | 공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신 : 국장 72   |  |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장소 : 용보지역사무소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목 : 일간신문 게재 의뢰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내용과 같이 일간신문 게재 의뢰하시 조처 바랍니다.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. 구분 : 광고,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게재 제목 : 도시계획사업시행안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법 근거 :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라. 게재 방법 : 일간신문 광고 (1회),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마. 광고 내용 : 별첨.  | 원<br>안<br>대<br>조<br>필 |
| 바. 광고 비용 : 사업시행자 부담(청구서에 의거 조처)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첨부 : 광고문(사본) 2부. 끝.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(제3안)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신 : 노원구 공릉동 215-4 한국원적벽연구소장      발신 : 서 장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목 : 같 음.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귀역에서 신청하신 노원구 공릉동 215-4 일대 도시계획시설(중앙대로<br>시설)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(변경)안을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규정에 의거 서류 공람<br>및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고, |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에 의거<br>사업시행자가 부담하시기 바랍니다.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|  |         |
|--|---------|
| 첨부 : 공고문(사본) 1부. 끝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(제4안)  |         |
| 수신 : 노원구청장   | 발신 : 시청 |
| 참조 : 도시경계획장  |         |
| 제목 : 같 음.  |         |
| 1. 사실 30314-133('91.3.22) 및 도경 30310-856('91.5.14)과 관련 |         |
| 영.   |         |
| 2. 구 구 관내 공릉동 215-4 일대 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)에 대한              |         |
| 도시계획사업시행(변경)안을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규정에 의거 서류 공람 및 공고하였       |         |
| 으니 관련업무에 참고 바람.  |         |
| 첨부 : 공고문(사본) 1부. 끝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(제5안)  |         |
| 수신 : 과학기술처장관   | 발신 : 시청 |
| 제목 : 같 음.  |         |
| 1. 원계 16210-14521('90.12.17)과 관련입니다.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2. 위 서류로 업조 요청하신 노원구 공릉동 215-4 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             |         |
| 시설)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(변경)안을 도시계획법 제27조의 2 규정에 의거 별첨과같이      |         |
| 서류 공람 및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
원안대조필

5-3

첨부 : 공고문(7번) 1부. 끝.

원안대조필

공 고



서울특별시 공고 제 160 호

도시계획사업시행(변경)안 서류 공람 및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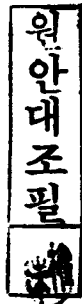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)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(변경)안을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에 의거 하여 와 같이 공고하고,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서류 공람합니다.

2.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 서류 공람 기간내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91. 5. .

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사업시행안



가. 사업시행지(변경있음) : 노원구 공릉동 215-4

나. 사업의종류(변경있음) : 도시계획사업(종합의료시설)

다. 사업시행규모

○ 대지 면적(변경있음) : 65,338m<sup>2</sup>

○ 연 면적 : 31,981.39m<sup>2</sup> → 32,072.29m<sup>2</sup>

라. 사업시행기간 : '84 - '88 → '84 - '91.12.31.

마. 사업시행자(변경있음) : 한국연자력연구소장

바. 계획 설계 도서 : 이 시설계획과 비치 도서와 같음. 끝.